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을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원료작업실에서 가공품작업실”를 “원료보관실에서 식육처리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공·처리”를 “포장·처리”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종전의 라목) 및 같은 목3) 전단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각각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축산물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가공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 중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3)라) 전단 중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의”로 하고, 같은 라) 후단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을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으로, “작업장의”를 “작업장 또는 업소의”로 하며, 같은 라)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영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4)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영업자

별표 10 제3호가목7)가)(4)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1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10 제6호차목 전단 중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 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으로, “작업장의”를 “작업장 또는 업소의”로 하며, 같은 목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영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4)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별표 11 제1호더목(5)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삭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	------------------------	--	--	--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라.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2항 위반”을 “법 제8조제2항 위반(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4의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유가공업·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5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탁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5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4의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	--------------------	--	--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	------------------------------------	--	---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5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탁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3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별표 12 제3의2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더목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0 제8호나목(1)(바)”를 “별표 10 제8호나목1)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생략)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u>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u> 및 <u>식육즉석판매가공업</u> 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 <u>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생략)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u> 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u>보관하여야</u> 한다.	② ----- <u>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u> ----- ----- ---- <u>보관해야</u> -----.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u>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u> 의 영업자에 대해 <u>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u>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u> ---- ----- -----.

1. · 2. (생략) ④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3(검사명령 이행기한) 법</u> <u>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u> <u>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u> <u>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u> <u>내로 한다.</u>
--	--